

한림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정: 2025년 10월 15일

제1장 총칙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제2절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제3절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제4절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

제3장 총동아리연합회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2절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제4장 동아리

제1절 중앙동아리

제2절 일반동아리

제6장 재정

제7장 시설물

제1절 중강당, 희망터, 연습실

제2절 동아리방

제8장 마일리지 제도

제9장 선거

제10장 회칙·세칙·시행세칙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림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림대학교 중앙동아리와 일반동아리 회원들을 대표하여 그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하며, 다양한 동아리 문화의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아리인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창의적이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학내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 ① 본회는 한림대학교의 중앙동아리와 일반동아리를 대표하는 독립기구이다.
- ② 본회는 회원 동아리의 권익을 옹호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대내적으로는 회원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외적으로는 동아리를 대표한다.

제4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또는 일반동아리에 소속된 회원으로 한다.
- ② 회원은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학부생으로만 인정한다.
- ③ 회원 파악은 매학기 총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는 회원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의 회원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 동아리는 본 회칙과 세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 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부당한 침해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방해를 받을 경우, 본회의 이름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중앙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예산, 공간, 행사 등 본 회가 제공하는 제반 지원의 우선권
 2. 총동아리연합회 주관 행사 참여의 우선권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② 본회의 민주적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 ③ 동아리와 회원은 성별, 성적 지향, 종교(중앙동아리로 인정되어있는 종교), 장애, 나이, 경제적 상황,

소속, 출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언어,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병력, 징계여부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회원을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단 종교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 각 동아리에서 정한 조건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의결) 본회의 주요 의결기구는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로 한다.

제8조(특별 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제9조(지위)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구성)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1조(의장)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한다.

제12조(권한)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결정한다.

제13조(소집)

①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1/5 이상의 연서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단 본회의 존립에 중대한 문제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시 의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소집 14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의결)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재적인원 1/10 이상의 회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제16조(지위)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실질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17조(구성)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단, 각 분과의 분과장, 각 중앙동아리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각 동아리 대표자는 각 동아리 회칙에 준한 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의 본회에서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동일인이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하나의 자격만 행사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위임받은 자와 위임을 받은자는 본회 회실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제17조 ②, ③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위임 없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권한을 회의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의장)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한다.

제19조(권한)

- ① 회칙 개정 발의 및 심의 의결권.
- ② 본회 소속 동아리의 신규등록, 재등록, 등록취소에 관한 심의 의결권.
- ③ 예산 결산안 및 사업의 심의 의결권.
- ④ 분과의 조정권.
- ⑤ 본회 소속 동아리 및 동아리 대표자의 징계회부 및 의결권.
- ⑥ 본회의 총회 소집요구권.
- ⑦ 동아리 활동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
- ⑧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에 대한 탄핵권.
- ⑨ 분과장에 대한 탄핵권.
- ⑩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제20조(안건 상정)

- ①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기본으로 상정한다.
- ② 개회 후 재적 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 또는 이견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 차원에서 안내해야하는 전파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① 정기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 매학기 초 의장의 발의로 소집하며 3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매학기 개강 후 4주 이내, 종강 전 4주 이내 필수로 2번씩 1년간 총 4번 소집해야한다.)

② 임시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 의장의 발의나 운영위원 2/3이상의 연서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2조(의결)

① 일반 안건의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 안건의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안건을 다음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로 안건을 이월한다.

제3절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

제23조(지위)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4조(구성) 총동아리연합회회장단, 분과장으로 구성된다.

제25조(의장)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한다.

제26조(권한)

① 총동아리연합회의 제반 사업 조정권.

② 총동아리연합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검토·조정 및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상정권.

③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소집 요구권.

④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상정권.

⑤ 기타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결정권.

⑥ 본회의 총회 소집요구권.

⑦ 징계 대상 동아리의 심의 후 총동아리대표자회의에 회부할 권리.

⑧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의결권.

⑨ 분과의 통폐합 및 변경 의결권.

제27조(안건 상정)

- ① 의장 발의로 안건을 상정한다.
- ② 개회 후 재적 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 또는 이견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28조(소집)

- ① 정기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 매월 1회로하며, 그 시기는 전회의에서 결정한다.
- ② 임시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이나,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 1/3이상의연서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9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

제30조(지위)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는 각 분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31조(구성)

- ① 총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의 성격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공연, 봉사, 종교, 취미•예술, 체육, 학술 6개 분과를 설치한다.
- ② 분과의 신설 통폐합 및 변경은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분과장으로 구성된다.

제32조(분과장) 분과장은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중 중앙동아리 대표자로 선정한다.

제33조(분과장선출) 분과 소속 동아리 대표자 2/3이상 출석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장이 선정한 방식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분과장을 선출한다.)

제33조(업무)

- ①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의 제반 활동들에 관한 사무를 토의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는 각 분과별 행사를 기획, 추진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는 기타 분과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토의한다.

제34조(안건 상정)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분과장의 발의로 안건을 상정한다.
- ② 개회 후 재적 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 또는 이견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35조(소집) 총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분과장이 소집하거나,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 1/3이상의연서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소집한다.

제36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동아리연합회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37조(구성) 본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제38조(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단, 회장단은 동직책을 연임할 수 없다.)

제39조(임무)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은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 ④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은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의결사항 중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⑤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은 기타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⑥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권한)

① 회장

- 1. 총동아리연합회를 대내적으로 대표하며 총동아리연합회의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

2. 본회의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분과회의 소집권.
 3. 회칙개정 발의권.
 4. 예산집행권.
 5. 특별위원회 소집요구권.
 6. 기타 본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권.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관한다. 회장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15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1조(신분 보장)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절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제42조(지위)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3조(구성)

- ①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과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선임하고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에서 공표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장(국장)과 집행위원부장(부장) 및 집행위원(부원)를 둘 수 있다.

제44조(업무 및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진다.
- ② 각 부서는 자신의 위상에 적용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동아리

제1절 중앙동아리

제45조(등록요건)

- ① 당해년도 동아리심의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② 20인 이상의 회원 명부(단, 3개단과대학 7개의 과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 ③ 학생회칙 및 본회의 회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④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되어야 하고 본교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 ⑤ 소비, 퇴폐, 저질문화의 유포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 ⑥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있는 중앙동아리의 회칙이 존재해야하며 이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회는 표준 회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 ⑦ 마일리지제도(제8장)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아야 한다.

제46조(등록취소)

- ① 재등록을 하지 않은 동아리.
 1. 재등록을 하지 않은 동아리는 제2절 “일반동아리”로 강등된다.
 2. 45조 등록요건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승격대기 일반동아리”로 강등된다.
 3. “승격대기 일반동아리”로 강등되는 경우 차기년도 즉시 중앙동아리 승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징계결정(마일리지제도(제8장), 동아리지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제명된 동아리.
 1. 본회에서 탈퇴된다.
 2. 2년 경과 후 일반동아리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시 : 25년도 제명 -> 27년도 일반동아리 신규신청 가능)

제47조(등록기간) 등록 기간은 매년 3월초 본회 및 학생지원팀에서 공고한다.

제48조(신규중앙동아리 승격)

- ① 제45조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② 기존 중앙동아리의 대표자 1/3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③ 기존 중앙동아리와 성격이 같은 일반동아리는 승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제51조 ②항 승격대기 일반동아리의 단계여야 한다.

제49조(등록절차)

- ① 재등록의 경우 모든 평가가 종료되어 동아리심의위원회의 재등록을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의결기구의 논의 없이 재등록된다.
- ② 신규중앙동아리 승격의 경우 선택한 분과에 해당되는 중앙동아리에서 같은 성격을 띄는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뒤 동아리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2차적으로 대면 PT발표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승인된 신규중앙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에서 공표한 뒤에 등록이 완료된다.

제50조(의무)

- ① 제출된 각 중앙동아리의 회칙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공개적으로 공개되며 이를 동의한다.
- ② 2학기에 경우에는 재등록절차가 없기 때문에 동아리회원 명부만 학기 초 4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선거등의 공식적인 사유로 회원 명단등의 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응해야한다.

제2절 일반동아리

제51조(구분)

- ① 제45조 ②항에 조건을 따라 다양한 단과대 및 학과의 인원들로 구성하는 중앙동아리와 유사한 규모·활동 범위를 지향하는 일반동아리와, 한가지의 단과대를 선정하여 인원을 구성하는 과동아리와 같은 성격을 보이는 일반동아리로(이하 과동아리) 구분한다.
- ② 제45조 ②항에 조건을 따라 중앙동아리의 성격을 따라가는 일반동아리의 경우 “신생 일반동아리”, “일반동아리”, “승격대기 일반동아리”로 세부적인 단계를 구분한다.
 1. “신생동아리”는 제52조 등록요건을 만족하여 신규 등록된 일반동아리를 칭한다.
 2. “일반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맞춰서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한 실적이 한학기 이상 증명되었으며, 지도교수님이 필히 선임되어 있는 일반동아리를 칭한다.
 3. “승격대기 일반동아리”는 중앙동아리와 동일하게 제45조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일반동아리를 칭한다.
 4. 각각의 일반동아리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본회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공된다.

제52조(등록요건)

① 일반동아리

1. 최소 10인 이상의 회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2. 확실한 활동 주제가 선정되어 있어야한다.
3. 최소 1개월 이상의 동아리활동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4. 소비, 퇴폐, 저질문화의 유포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② 과동아리

1. 같은 단과대 20인 이상의 회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2. 확실한 활동 주제가 선정되어 있어야한다.
3. 최소 3개월 이상의 동아리활동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4. 소비, 퇴폐, 저질문화의 유포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5. 기존에 학과에서 이미 등록되어있던 과동아리인 경우 등록요건을 만족한다.

제53조(등록기간) 등록은 상시 가능하다.

제54조(등록절차)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분과를 결정하며 일반동아리 등록을 승인한다.

(단, 일반동아리 등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과장과 함께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55조(의무)

- ① 매년 말 본회에서 요구하는 실적 증명서, 활동 계획서, 회원명단등을 제출해야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선거등의 공식적인 사유로 회원 명단등의 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응해야한다.

제6장 재정

제56조(재원)

- ① 본회의 재정은 총동아리연합회비, 교비보조로 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외부 협찬 및 기타 수입금은 본회의 수입이 된다.

제5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58조(예결산)

- ① 한림대학교 자치기구인 예결산심의위원회에 공개해야하는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심의

받는다.

② 이월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59조(총동아리연합회비) 총동아리연합회비는 동아리당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총동아리연합회에서 년초 납부 진행 여부와 금액과 그 시기는 1차 총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여 확정한다.

제60조(특별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집행이 타의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발의로 특별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제22조 제2항(특별안건 의결 요건)에 따른다.

제7장 시설물

제1절 중강당, 희망터, 연습실

제61조(사용) 본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중강당, 희망터, 연습실로 하며, 해당 공간은 동아리 공연 및 학생 문화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대여한다.
(단, 예외적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62조(대여원칙)

- ① 중강당, 희망터, 연습실 대여는 본회가 정하는 기간에 신청을 받는다.
- ② 중강당 사용은 중앙동아리에 한해서 학기당 4번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학생단체의 대여는 본회에서, 교내 부서·기관의 대여는 학생지원팀에서 관리한다.
- ④ 대여는 원칙적으로 선착순을 기준으로 하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본회가 이를 조정한다.
- ⑤ 희망터의 범위는 캠퍼스라이프센터 2층 정문 앞 공터, 계단 및 계단 위 일대로 한다.

제63조(관리자)

- ① 시설물 총괄 관리자는 매년 3월 초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한다.
- ② 관리자는 각 시설물의 조명, 음향, 시스템 등 운영을 지원한다.

제64조(유의사항)

- ① 대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시설 및 장비의 파손·분실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③ 중강당 및 연습실 내의 음식물의 반입과 흡연을 금한다.
- ④ 사용후의 청소는 사용자 측이 책임진다.
- ⑤ 본회와 협의된 이용시간 외의 이용을 금한다.
- ⑥ 무단이용을 금한다.

제65조(사용제한) 제6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회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1차 위반 시 경고를 부여하고, 재차 위반 시 해당 학기 동안 시설물 사용을 금지한다.

제2절 동아리방

제66조(사용목적) 동아리방은 동아리 구성원의 공용공간으로,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한다.(단, 이에 따른 예외는 관례에 따른다.)

제67조(유의사항)

- ① 동아리방 출입문 유리창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가리지 않는다.
- ② 동아리방 사용 시 소음으로 타 동아리 및 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③ 동아리방 내 흡연과 음주는 금지한다.
- ④ 동아리방 내 교내 비품·가구는 임의로 이동, 파손 또는 폐기할 수 없다. (관련 문제는 본회에 문의한다.)
- ⑤ 동아리방 앞 복도는 공용공간으로 특정 동아리가 점유할 수 없다.
- ⑥ 동아리방 벽·바닥·천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 ⑦ 동아리방 관련 분쟁은 동아리 대표자가 우선 해결하며, 필요 시 본회가 중재할 수 있다.

제68조(위반) 제67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회는 경고 1회를 부여하며, 경고는 제8장 마일리지 제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마일리지제도

제69조(목적) 본 제도는 중앙동아리의 활동 참여와 의무 이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마일리지 점수를 기반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동아리 간 건전한 경쟁과 순환을 유도하고, 공정한 지원 배분과 승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제70조(대상) 본 제도는 중앙동아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제71조(세칙) 본 제도의 세부 항목, 배점, 산정 방식 및 운영 절차등의 내용은 별도로 제정하는 「마일리지제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장 선거

제72조(선거의 원칙)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한다.

제71조(선출 대상 및 임기)

- ① 본회는 회장단을 선거로 선출한다.
- ②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① 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② 피선거권은 본 회의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있다.

제74조(보궐선거)

회장단에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50일 미만일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75조(비상대책위원회)

- ①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선거가 무산되어 회장단이 부재한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분과장 및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가 정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분과장 중 호선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일상적 업무를 집행하며, 긴급 사안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단, 회칙 개정, 회장단 신임 및 해임과 같은 중대 사안은 다룰 수 없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기구로서, 차기 회장단 선출 시 즉시 해산한다.

제76조(선거관리)

- ① 선거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의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단은 위원장이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또는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 인원 중에서 지명하여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운영 방식 및 선거 절차는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회칙·세칙·시행세칙

제77조(회칙개정 발의)

- ① 회칙 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발의 절차를 진행한다.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체 중앙동아리 대표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제78조(의결)

- ① 회칙 개정안은 총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동아리대표자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9조(효력발생)

확정된 개정안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경과 규정)

- ① 본회는 기존 한림대학교 동아리연합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별개의 단체로서, 동아리연합회와 총동아리연합회는 조직·직책상 연속성이 없다.
- ② 기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본회의 회장단에 출마하는 경우, 이는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본회의 제1대 회장단은 회칙 시행 이전에 선거관리세칙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이 회칙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